

## 대형·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실천과제(TOP3)

Top 3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기인물과 직업별로 교차분석하여 도출한 사망사고 다발 상위 3개 직업을 표현한 것임

### 사고 사망

#### TOP1 정비작업중 기계에 끼임

- 조작전원키스위치 없는 기계 사용하지 않기!
- 정비, 점검 작업 시 조작전원키스위치 키는 작업자 주머니에!



#### TOP2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

- 지게차 운전은 유자격자만 하기!
- 지게차 주변 1m이내에 접근하지 않기!



#### TOP3 용접작업 중 화재·폭발

- 용접작업은 유자격자가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하기!
- 용접작업 전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하기!



### 질식, 중독

#### TOP1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, 중독

-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하기!
- 밀폐공간 작업은 환기시설과 함께!



#### TOP2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

- 통풍이 안되는 장소에는 연소기구를 사용하지 않기!
- 지갈탄사용 콘크리트 양생장소는 연탄가스 조심!

#### TOP3 독성물질 취급 중 급성중독

- 화학물질 취급시에는 환기장치 가동하기!



제출기관 연락처 :  
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(지사)

기관명	소재지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	02-6711-2841
서울북부지사	서울시 중구 칠패길 42(봉래동 1가) 우리빌딩 7층	02-3783-8312
강원지사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(온의동)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033-815-1011
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(교동, 정관빌딩) 3층	033-820-2511
부산지역본부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)	051-520-0524
울산지사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8번길 5(산정동)	052-226-0552
경남지사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(용호동)	055-269-0552
경남동부지사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	055-371-7523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,9,11층	062-949-8743
전북지사	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(인후동)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	063-240-8533
전북서부지사	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(청서동) 2층	063-460-3622
전남동부지사	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061-689-4954
전남서부지사	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	061-288-8705
제주지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 2동)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	064-797-7502
충북지역본부	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(구산동)	032-510-0511
경기남부지사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10층, 13층 (이의동,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)	031-259-7124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031-828-1919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(고잔동) 2층	031-481-7513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(금곡동) 소곡회관 2층	031-785-3322
부천시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(상동) 대신프라자 3층	032-680-6518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,20층	053-609-0522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	053-650-6833
경북동부지사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054-271-2034
경북북부지사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(임수동)	054-478-8012
대전지역본부	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	042-620-5611
충북지사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(가경동) KT빌딩 3층	043-230-7121
충남지사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창로 215(불당동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041-570-3423

2015-안전-132



모기업 - 협력업체  
안전보건 공생발전은

안전보건

공생협력  
프로그램

으로

해결하세요!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 
안전보건공단



## 「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」 사업이란?

모기업(원도급업체)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'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'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, 모기업은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, 공단은 현장기술지도,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.

-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) 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, 모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.





## 프로그램 개요

### ■ 프로그램 수립 · 시행 대상

- 업종: 제조업, 전기업, 통신업, 서비스업, 운수창고업
- \* 조선업은 「안전보건 이행평가제」, 건설업은 「건설업 안전보건 공생사업」에 따라 별도 추진
- 대상: 원 · 하청 10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

### ■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

- 제출 기간: '14.3. 2(월) ~ 3.13(금), 2주간
- 제출 서류: 신청서 [사업장현황조사표, 참여협력업체현황, 세부계획서, 4대 안전수칙준수서약서]
- 접수처: 모기업 사업장 소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(지사) [안전보건공단 연락처 참조]

### ■ 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관리

-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참여 사업장별 등급부여
  - A 등급
    - 다음년도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(고용부)
    - 다음년도 1년간 KOSHA 18001 사후심사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(공단)
  - B 등급
    - 인센티브 없음
  - C 등급
    - 2회 연속 'C' 등급 평가 시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 명령(고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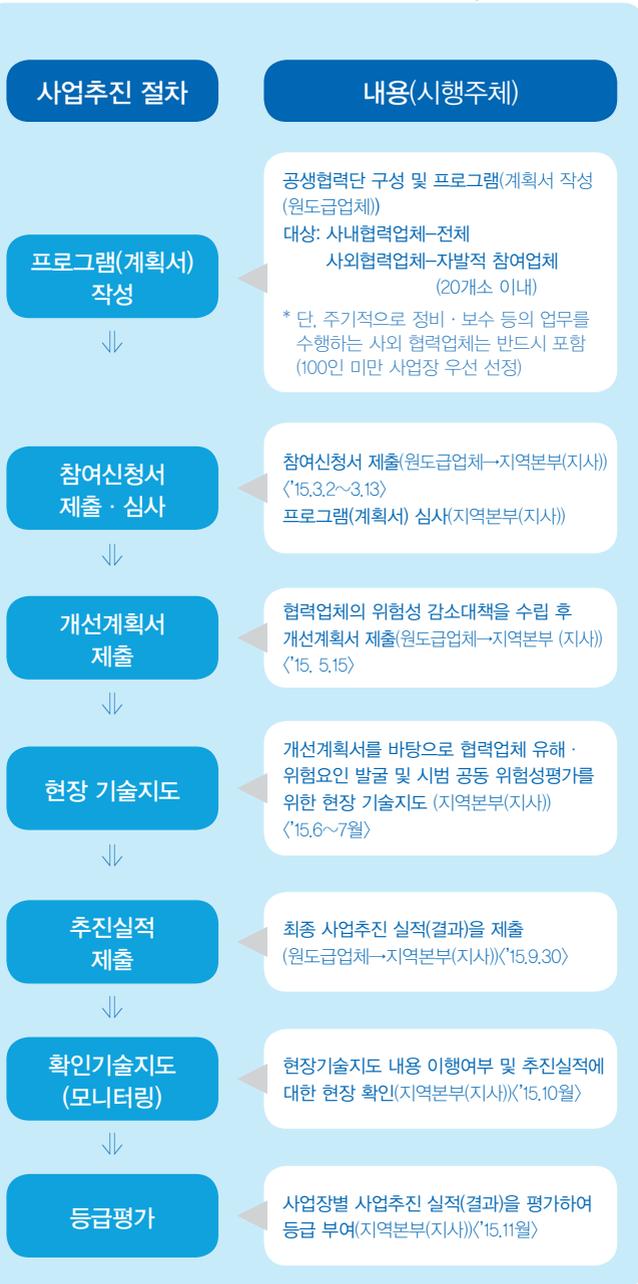
### ■ 프로그램 추진 우수 사례

-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(7월중)
  - ※ 세부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
-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

안전보건공단(www.kosha.or.kr) → 사업안내/신청 → 산업안전 →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→ 추진사례



##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



##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

### ■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구성항목

#### A. 공생협력 추진의지

1.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

#### B.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·적정성

1. 안전보건 공생협력 규정 작성·공유
2.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
  - 2.1.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
  - 2.2.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
  - 2.3.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
  - 2.4.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·이행
3.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·집행의 적정성

#### C.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(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만점부여 가능)

1. 위험성평가 계획(P)
  - 1.1.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
  - 1.2.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
  - 1.3. 위험성평가 대상공정,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·활용
2. 위험성평가 이행(D)
  - 2.1.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
  - 2.2. 유해·위험요인 파악
  - 2.3. 위험성 크기 추정
  - 2.4. 위험성 결정
  - 2.5.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
3. 위험성평가 이행확인(C)
  4. 지속적 개선(A)
  5. 기록

#### D.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

1. 계획대비 이행도
2. 적용 법규의 준수 정도
3.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정도
4. 만족도 조사 및 환류
  - 4.1.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
  - 4.2. 협력업체 애로 및 개선요구 사항의 반영 수준

#### E.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

1. 자율안전 실행수준 : 참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비율
2. 재해발생수준
  - 2.1. 참여 사업장의 전년대비 재해율 감소율
  - 2.2. 참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



## 산재예방요율제 안내

### ■ 산재예방요율제란?

-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\*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\*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

\* 위험성평가 :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·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실행하는 활동  
\*\* 사업주 교육 :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

### ● 적용대상 :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

※ 일괄계속사업장인 경우,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

### ● 적용방법

산재보험요율 인하율

- 사업주교육 인정: 10%
- 위험성평가 인정: 20%

※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(징수법 참조)을 적용하며,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괄 계산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 
- 관련근거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(산재예방요율의 적용)

### ● 인정 유효기간 : 위험성평가 인정 3년, 사업주교육 인정 1년

\*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(일괄계산)

### ● 업무 처리 절차

\* 산재예방요율의 신청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수행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(안전보건공단) → 보험요율에 반영(근로복지공단)

### ■ 「위험성평가」 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



### ■ 「사업주교육」 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

